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5. 31(월)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5월 15일 이천시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5월 15일
- 다. 상 정 일 자 : 제6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2004. 5. 29)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 제안이유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의 상위관계법령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2003.11.30)중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망실”을 “유실”로 자구 수정 -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안 제5조제1항)
- 도서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100분의3”을 “100분의 5 이내로 조정” (안 제14조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해수)

-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중 일부가 2003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18144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자구와 인용된 도서자료의 폐기범위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음